



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신자 전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조
 제목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증보험증서 제출 관련 진행사항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개정에 따른 보증보험 증서 제출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16.4.12)을 진행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매립업계의 보험증서 발급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키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보험증서 제출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불임과 같이 환경부에 건의('16.4.19)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울보증보험 관계자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 시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등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울보증보험 관계자 연락처

부 서	성 명	직 책	연 락 처
마케팅관리부	이규민	팀 장	TEL) 02 - 3671 - 7336 H·P) 010 - 3395 - 6564
	김준우	대 리	TEL) 02 - 3671 - 7368 H·P) 010 - 5192 - 0916
구로디지털지점	조지영	부지점장	TEL) 02 - 846 - 0021 H·P) 010 - 4170 - 7093

불임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증보험증서 제출 관련 건의의견



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협회장

담 당 김광수 팀 장 김진오 사무국장 장기석 상근부회장 진원기 회 장 이민석

협 조

시 행 한매협 2016 - 26호 (2016. 4. 22) 접수

우 157-7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11층(등촌동, 우리벤처타운) / www.kiwrma.or.kr

전 화 02-718-7900 전 송 02-718-7171 / kiwrma@kiwrma.or.kr / 비공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증보험증서 제출 관련 건의의견

1] 사후관리이행에 따른 보증보험증서 반환 기준 마련 필요

가. 문제점

- 사후관리이행 시 현금에 대한 반환기준은 있으나,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반환 기준이 없어 업체가 사후관리 이행에 따른 감액된 보험증권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과다 지급하는 문제

나. 개선방안

- 관할 행정기관에서 업체가 사후관리를 이행한 만큼 감액된 보험증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반환기준 마련 필요

※ 예시 : 사후관리비용 30억원, 사후관리기간 30년

- 매년 사후관리이행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감액된 보험증권으로 교체
- 30억원, 30년(40,140만원) / 29억원, 29년(37,509만원) / 28억원, 28년(34,966만원) ………1억원, 1년(45만원)

다. 건의(안)

개정 (안)	건의 (안)
<p>VI.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p> <p>7.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반환</p> <p>다. 반환절차</p> <p>○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가 있으면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u>지급하여야 한다.</u></p>	<p>VI.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p> <p>7.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반환</p> <p>다. 반환절차</p> <p>○ (생략) <u>지급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업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행한 만큼 감액된 보험증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p>

② 보증보험증서 납부 기준 마련 필요

가. 문제점

- 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사용종료검사, 최종복토)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침출수, 매립제방, 환경오염조사, 정기검사)의 보증기간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보험증서로 제출함에 따라 초기 납부 보험료가 과다 책정되는 문제

나. 개선방안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시 각 비용에 맞게 보증기간을 산정하여 각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시 : 사용종료 비용(10억원), 사후관리비용(10억원), 50% 초과시부터 사용종료 기간(5년), 사용종료시부터 사후관리종료 기간(30년)

1) 한 개의 보험증권 발급시 초기 납부 보험료: 31,220만원(20억원, 35년)

- $0.446\% \times 20\text{억원} \times 35\text{년} = 31,220\text{만원}$

2) 사용종료, 사후관리 각각 보험증권 발급시 초기 납부 보험료: 17,840만원 (10억원, 5년 / 10억원, 35년)

- $0.446\% \times 10\text{억원} \times 5\text{년} = 2,230\text{만원} / 0.446\% \times 10\text{억원} \times 35\text{년} = 15,610\text{만원}$

다. 건의(안)

개 정 (안)	건의 (안)
<p>VII.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p> <p>6.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확인결과 및 사전적립금 납부통보</p> <p>다. 사전적립금 적립예치 같음</p> <p>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p> <p><u>가), 나) (신 설)</u></p>	<p>VII.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p> <p>6.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확인결과 및 사전적립금 납부통보</p> <p>다. 사전적립금 적립예치 같음</p> <p>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p> <p><u>가) 보험증권은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구분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u></p> <p><u>나) 각 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적립 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u></p>